|  |  |  |
| --- | --- | --- |
|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정비 업무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총서공고[2015]59호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구역'으로 약칭) 내 보세정비 업무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보세구, 수출가공단지, 보세물류단지,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주하이(珠海)-마카오 광역 공업단지 산하 주하이(珠海) 공업단지 및 중국-카자흐스탄 훠얼궈스(藿爾果斯) 국경협력센터 중국측 기능구역 등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 공고를 적용 받는다.  (1)보세의 방식으로 부품 파손, 기능 상실, 품질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한 화물(이하 '정비대기화물'로 통칭)을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수리 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  (2)국내(구역 외)의 정비대기화물을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수리 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하는 업무.  운송수단의 명의로 입국되어 정비를 받는 외국국적의 선박, 항공기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는 이 공고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2. 구역 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법률•법규 및 규장이 허용하는 업무;  (2)국무원 또는 국가 관련부서가 비준한 업무;  (3)구역 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였거나 본 그룹내 기타 국내기업이 국내(구역 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한 구역 내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역 내로 반입하여 정비하는 업무.  국무원 및 국가 관련부서가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의 정비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세정비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H장부를 개설하여야 하고 정비대기화물, 정비완료화물(검측•수리 과정을 거쳐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은 화물 포함), 정비용 재료•부품의 전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세정비 장부를 개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제도 및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 소모 등 정보에 대한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해관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정비대기화물, 정비완료화물, 정비용 재료•부품, 정비 과정에서 교체한 파손 부품(이하 '파손부품'으로 약칭),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정비용 재료•부품의 자투리(이라 '부품 자투리'로 약칭)에 대한 전문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역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비준문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기업은 보세정비 화물의 반입, 반출, 이월, 보관, 소모 상황을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하여 물량정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정비대기화물은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정비(검측•수리 과정을 거쳐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판정받은 화물 포함) 과정을 거친후 다시 해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정비대기화물을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였거나 정비완료화물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비대기화물을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는 경우 구역 외 기업 또는 구역 내 기업은 '정비물품'(코드 1300)을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수출화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정비완료화물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하는 경우 구역 외 기업 또는 구역 내 기업은 '정비물품'(코드 1300)을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완료화물 및 정비요금을 두개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완료화물의 물량은 실제반입물량으로 하고 세금감면 방식은 '전부 면제'로 한다. 정비요금의 수량은 01로 하고 세금감면 방식은 '규정에 따라 징수'로 하며 품목번호란에는 정비완료화물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세율과 환율은 정비완료화물의 국내(구역 외) 반출 신고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일자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한다.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 명칭은 정비완료화물의 실제 명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정비용역계약서(또는 정비 조항이 들어있는 내수시장판매계약서), 정비영수증 등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정비 업무에 따른 정비요금의 완세가격은 보세재료•부품 소모량과 정비요금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통하여 확정한다. 구역 외로 반송되어 구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정비절차에 해당되는 정비요금은 단독으로 열거가 가능한 경우 완세가격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8. 정비대기화물을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정비완료화물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함에 있어 집중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해관총서령 제19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9. 정비용 재료•부품은 보세화물로 간주하여 관리하며 기업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수출입화물 신고서,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 작성 규범>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서 작성규범>에 따라 정비용 재료•부품의 출입국, 출입구역, 이월 등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된 정비대기화물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원칙상 해외로 다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리 방식은 '수입 부품 자투리 재반출'(코드 0865) 또는 '고객 제공 부품 자투리 재반출'(코드 0864)로 한다. 사정상 해외로 재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가공단지의 자투리•폐품•불량품 단지 외 반출처리 문제에 관한 해관총서•환경보호부•상무부•질검총국의 통지>(서가발[2009]172호)를 참조하여 국내(구역 외) 운송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되는 정비대기화물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보조관리시스템에 등기한 후 국내(구역 외)로 운송이 가능하다.  고체폐기물에 해당되는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해관총서•질검총국이 연합공표한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1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출입국 신고 시 기업은 실제 출입국 운송방식에 따라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의 운송방식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에서의 구역 내 출입 신고 시 기업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수출입화물 신고서,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 작성규범>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명세서,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의 운송방식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구역 내 기업이 정비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법상의 제한 등 사유로 정비화물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일부 정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해관총서령 제191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보세정비 업무 장부의 물량정산 주기는 2년을 넘기지 아니한다.  1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시정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보완 조치를 취하는 동안 해관은 신규 보세정비 업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이 공고 제2조, 제3조에 규정한 업무 취급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밀수의 혐의가 있어 해관이 입건 및 수사를 시작한 경우;  (3) 1년 내에 2회 이상의 범칙행위를 행한 경우;  (4)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정비완료화물, 정비대기화물, 파손부품 또는 부품 자투리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의 '규정된 기한'은 관할 해관이 보세정비용역계약서 및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기업은 시정보완 조치가 끝난 후 시정보완 결과를 관할 해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후 신규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2015년 12월 11일 |  | **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内保税维修业务有关监管问题的公告**  总署公告〔2015〕59 号  为规范海关特殊监管区域（以下简称“区域”）内保税维修业务管理，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适用于保税区、出口加工区、保税物流园区、保税港区、综合保税区、珠澳跨境工业区珠海园区以及中哈霍尔果斯边境合作扣心中方配套区等区域内开展以下保税维修业务：  （一）以保税方式将存在部件损坏、功能失效、质量缺陷等问题的货物（以下统称“待维修货物”）从境外运入区域内进行检测、维修后复运出境；  （二）待维修货物从境内（区域外）运入区域内进行检测。维修后复运回境内（区域外）。  以运输工具申报进境维修的外籍船舶、航空器的海关监管，不适用本公告。  二、区域内企业可开展以下保税维修业务：  （一）法律、法规和规章允许的；  （二）国务院批准和国家有关部门批准同意开展的；  （三）区域内企业内销产品包括区域内企业自产或本集团内其他境内企业生产的在境内（区域外）销售的产品的返区维修。  除国务院和国家有关部门特别准许外，不得开展国家禁止进出口货物的维修业务。  三、企业开展保税维修业务，应当开设H账册，建立待维修货物、已维修货物（包括经检测维修不能修复的货物）、维修用料件的电子底账。设立保税维修账册应当符合以下条件：  （一）建立符合海关监管要求的管理制度和计算机管理系统，能够实现对维修耗用等信息的全程跟踪。  （二）与海关之间实行计算机联网并能够按照海关监管要求进行数据交换。  （三）能够对待维修货物、巳维修货物、维修用料件、维修过程中替换下的坏损零部件（以下简称“维修坏件”）、维修用料件在维修过程中产生的边角料（以下简称“维修边角料”）进行专门管理。  按照法律、法规和规章规定须由区域管理部门批准的，企业应当提供有关批准文件。  四、企业应当向海关如实申报保税维修货物的进、出、转。存和耗用情况，并向海关办理核销手续。  五、待维修货物从境外运入区域内进行检测、维修（包括经检测维修不能修复的）后应当复运出境。待维修货物从境外进入区域和已维修货物复运出境，区域内企业应当填报进（出）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保税维修”（代码1371）。  六、待维修货物从境内（区域外）进入区域，区域外企业或区域内企业应当填报出口货物报关单，监管方式为“修理物品”（代码1300），同时区域内企业应当填报进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保税维修”（代码1371）。  七、已维修货物复运回境内（区域外），区域外企业或区域内企业应当填报进口货物报关单，监管方式为“修理物品”（代码1300），已维修货物和维修费用分列商品项填报。已维修货物商品项数量为实际出区域数量，征减免税方式为“全免”；维修费用商品项数量为01，征减免税方式为“照章征税”，商品编号栏目按已维修货物的编码填报；适用海关接受已维修货物申报复运回境内（区域外）之日的税率、汇率。  区域内企业应当填报出境货物备案清单，监管方式为“保税维修”（代码1371），商品名称按巳维修货物的实际名称填报。  企业应当向海关提交维修合同（或含有保修条款的内销合同）、维修发票等单证。保税维修业务产生的维修费用完税价格以耗用的保税料件费和修理费为基础审查确定。对外发至区域外进行部分工序维修时发生的维修费用，如能单独列明的，可以从完税价格中予以扣除。  八、待维修货物从境内（区域外）进入区域和已维修货物复运回境内（区域外）需要进行集中申报的，企业应当参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保税港区管理暂行办法》（海关总署令第191号）有关规定办理手续。  九、维修用料件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企业应当按照《海关特殊监管区域进出口货物报关单、进出境货物备案清单填制规范》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对维修用料件进出境、进出区域、结转等进行申报。  十、对从境外进入区域的待维修货物产生的维修坏件和维修边角料原则上应复运出境，监管方式为“进料边角料复出”（代码0865）或“来料边角料复出”（代码0864）。确实无法复运出境的，可参照《海关总署环境保护部商务部质检总局关于出口加工区边角料、废品、残次品出区处理问题的通知》（署加发［2009］172号）办理运至境内（区域外）的相关手续。  对从境内（区域外）进入区域的待维修货物产生的维修坏件和维修边角料，可通过辅助管理系统登记后运至境内（区域外）。  维修坏件和维修边角料属于固体废物的，应当按照环境保护部、商务部、发展改革委、海关总署、质检总局联合制发的《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环境保护部令第12号）有关规定办理。  十一、在进出境申报时，企业应当按进出境实际运输方式填报进（出）境货物备案清单的运输方式栏目。在自境内进出区申报时，企业应当按《海关特殊监管区域进出口货物报关单、进出境货物备案清单填制规范》的规定填报进出口货物报关单、进（出）境货物备案清单的运输方式栏目。  十二、维修业务开展过程中，由于部分工艺受限等原因，区域内企业需将维修货物外发至区域外进行部分工序维修时，可比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保税港区管理暂行办法》（海关总署令第191号）第28条规定办理有关手续，并遵守有关规定。  十三、保税维修业务账册核销周期不超过两年。  十四、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应当予以整改。整改期间，海关不受理新的保税维修业务：  （一）不符合本公告第二、三条所述业务开展条件的；  （二）涉嫌走私被海关立案调查的；  （三）一年内两次发生违规的；  （四）未能在规定期限内将已维修货物、待维修货物、维修坏件或维修边角料按规定处置的。  第四项所述“规定期限”由主管海关根据保税维修合同和实际情况予以确定。  企业完成整改，并将整改结果报主管海关认可后，企业方可开展新的保税维修业务。  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  海关总署  2015年12月11日 |